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4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박수영·서천호·정태호

김 건・이성권・구자근

고동진 · 서일준 · 박수민

김예지 · 진종오 · 정성국

이종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 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입장권등"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제4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금지 등) ①
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	
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	
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	
으로 <u>자신이 구입한 가격을</u> 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판매 신
	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

워)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6. (생략)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판 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 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 제4조의4(온라인 공연예술의 지 위)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 략)

 <신 설>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 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 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